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계약의 목적

서비스 이용자와 보호자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계약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.

2. 계약기간

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.

- 1)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,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.
- 2)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.
- 3) 등급의 변동, 계약기간 종료 시,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.

3. 기관의 의무

- 1)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 이용에 대한 요구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.
- 2) 기관은 계약의 체결 시 서비스 이용에 관한 상세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.
- 3) 기관은 서비스제공 계획에 따라 실시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(보호자)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4. 이용자의 의무

이용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를 제공 받음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.

- 1)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불의의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서비스가 수행되도록 본 기관과 서비스 제공자에게 적극 협력하도록 한다.
- 2)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하여 상호 협의에 의하여 변경하도록 한다.
- 3) 기초생활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관할 시·군·구에 이용승인을 받아야 한다.

- 4) 월 이용료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기타 비용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납부 하여야 한다.

5.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

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.

1) 월 이용료

가.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의한다.

■ 방문요양 / 방문목욕

(2023. 01.01 기준)

분류번호	분 류	금액(원)	요 금			
			일반요금	9%감경	6%감경	기준수급자
가-1	30 분 이상	16,190	2,420	1,450	970	0
가-2	60 분 이상	23,480	3,520	2,110	1,400	0
가-3	90 분 이상	31,650	4,740	2,840	1,890	0
가-4	120 분 이상	40,280	6,040	3,620	2,410	0
가-5	150 분 이상	46,970	7,040	4,220	2,810	0
가-6	180 분 이상	52,880	7,930	4,750	3,170	0
가-7	210 분 이상	58,930	8,830	5,300	3,530	0
가-8	240 분 이상	65,000	9,750	5,850	3,900	0
나-1	차량 내 목욕 60 분이상	82,160	12,320	7,390	4,920	0
나-2	40분 이상 60분 미만	65,730	9,850	5,910	3,940	0

■ 재가급여 월 한도액

등급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	인지지원등급
월 한도액 (원)	1,885,000	1,690,000	1,417,200	1,306,200	1,121,100	624,600

*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.

가.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이 때에도 자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.(일상 업무대행에 따른 비용 등)

나.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2) 본인부담금

구 분	일반대상자	40%감경대상자	60%감경, 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	국민기초생활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
재가급여	15%	9%	6%	면제

*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.

6.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계약 시 대리인을 지정할 경우 대리인은 신원인수인(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)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지닌다.

1) 신원인수인의 권리

가.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,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 할 권리가 있다.

나.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2) 신원인수인의 의무

가.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기관에 제공하 여야 한다.

나.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.

다.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.

라.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과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의 책임을 진다.

마. 관계 법령에 의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부담할 의무를 진다.

7. 계약의 해제 및 절차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.

1) 대상자 본인 또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이다.

2) 대상자의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

3)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 등으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될 때

4) 특정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

5) 고의적으로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,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이다.

6) 계약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 때.

가. 계약해제의 사유에 해당되는 이용자는 통보되는 즉시 해제 절차를 이행한다.

나. 계약해제처리 된 후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한다.